

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5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권철승 · 전용기
서삼석 · 송재봉 · 조계원
정준호 · 장종태 · 김주영
전종덕 · 서영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기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, 현행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, 현행법은 해기사가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을 위반하여 약물·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한 경우 또는 약물·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

지 아니함.

또한 「해상교통안전법」과 유사하게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은 해당 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·약물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「해상교통안전법」 및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·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9조 및 제10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476호) 및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48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 또는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1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시·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전단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전단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1조의2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·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면허의 취소 등) ①·② (생략)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2조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 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<u>경우에</u> <u>는</u>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 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 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 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.	제9조(면허의 취소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 <u>또는 「납시 관리 및 육성법」</u> <u>제31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</u> <u>해당하여 시·도경찰청장, 지방</u> <u>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·군수</u> <u>·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<u>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</u> <u>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2조제3</u> <u>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</u> <u>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</u> <u>또는 「납시 관리 및 육성법」</u> <u>제31조의2제3호 또는 제4호에</u>

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. ⑦ ~ ⑨ (생략) 제10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<u>제4항</u>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	----- -----. ⑧ ~ ⑩ (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) 제10조(청문) ----- -----<u>제5항</u>----- ----- -----.
--	--